KOSHA GUIDE C - 72 - 2012

- (4) 지하연속벽 공사의 설계서는 현장의 지형, 지반조건, 지하매설물 및 지상장 애물 등의 현장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것이어야 하며, 시공자는 이의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.
- (5) 전체 공정에서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시 공하여야 하며, 안전작업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(가) 플랜트의 설치 위치
 - (나) 안정액의 공급·회수 방법 및 경로
 - (다) 철근조립장
 - (라) 투입장비의 종류 및 능력
 - (마) 장비의 이동경로
 - (바) 가설전기의 인입경로 및 용량
 - (사) 근로자의 안전보건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및 보호장구
- (6) 벤토나이트 등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보건을 위하여 MSDS(Material Safety Data Sheet)의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. 즉, 화학물질의 제조자명, 제품명, 성분과 성질, 취급상의 주의사항, 적용법규, 사고시의 응급처치방법 등을 기재한 취급설명서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두어야 한다.
- (7) 플랜트, 가설전기 분전반 등은 지반침하로 인하여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8) 플랜트, 철근조립장 및 가설분전반은 작업 시 상호 간섭에 의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.
- (9) 가설전기 수전반은 관계근로자 이외의 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구획된 장소를 정하여 방호울, 시건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.
- (10) 장비의 이동경로는 이동 중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견고한 지반을 유지하여야 하며, 필요시 잡석다짐, 콘크리트 타설, 깔판(철판)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11) 장비를 현장에 반입하기 위한 이송 경로 및 방법, 조립위치를 고려하여 하